

#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 토지매수 위수탁 협약서



함 양 군  
(주) 다 온

2011. 11. 10.

대남전원주택조성사업  
토지매수 위수탁 협약서

#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 토지매수 위·수탁 협약서

본 협약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31조제1항제2호의 규정 및 2009. 8. 27일 함양군과 주식회사 다운이 체결한 『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투자협약서』 제11조에 의한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 편입용지의 매수를 위한 협약으로써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.

**제1조(목적)** 함양군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『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』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다운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은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와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·수탁함에 있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·수탁 부동산 개요)** “갑”과 “을”은 다음과 같이 본 위수탁 협약의 토지 및 지장물의 범위를 정하고 “갑”은 본 협약에 의거 협의 및 수용의 방법으로 위·수탁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① 위치 : 경남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일원
- ② 대상 부동산 :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지내 토지와 대상 토지에 존재하는 지장물 및 분묘
- ③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지내 감정평가 누락지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“갑”과 “을”의 합의하에 변경가능

**제3조(위·수탁 업무의 한계)** 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협약에 의한 수탁자와 위탁자로서 다음과 같이 업무의 한계를 정한다.

- ① 수탁자인 “갑”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.
  1. 지적측량에 의한 지적관련 공부의 작성과 정리

2. 용지 및 지장물, 분묘에 대한 보상협의, 계약, 보상금 지급
3. 국공유지의 수의계약에 의한 협의 처분
4. 과오불금의 반납 징수
5. 보상금 집행상황의 정리 및 정산
6. 보상계획의 수립 공고 및 열람 업무
7. 보상관련 소송수행 관련 업무
8.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실제 소유자 확인
9. 등기 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 청구 및 확인
10. 무연분묘의 개장 및 이장 관련 업무
11. 협의 매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수용 업무
12. 기타 “갑”과 “을”이 상호 협의된 사항
13. 1호 내지 12호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.

② 위탁자인 “을”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용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와 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2. 용지 및 지장물 등의 평가의뢰 및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
3. 개발계획의 범위 내에서 용지매수 구역선의 확정
4.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금의 총당
5. 공고, 용역, 분할, 측량, 등기 및 소송에 필요한 실비의 부담
6. 보상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(출장 등)의 부담
7. 무연분묘의 개장 및 이장 비용 부담
8. 기타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
9. 잔여지 및 간접보상과 관련된 매수 및 지급 결정
10. 보상금 지급토지 및 철거하지 않을 건축물 등의 이전등기 업무
11. 토지 등 수용에 필요한 경비 부담
12. 기타 “갑”과 “을”이 상호 협의된 사항

**제4조(보상금 재원의 입금)** ① “을”은 토지(지장물 포함) 등의 감정평가 및 관련서류를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은 제1항에 의하여 감정평가 및 관련서류를 “갑”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의 감정평가 상당액을

“갑”이 지정하는 함양군 세입세출외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.

③ 평가대상물건 누락 등으로 인한 감정평가액의 변동시 그 증액분을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재감정평가 만료일로부터 10일내에 본조 제2항에서 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.

④ “을”은 제3조제2항제9호에 의거 잔여지 매수를 결정한 후, 매수결정으로 인한 증액분을 결정후 10일내에 본조 제2항에서 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.

**제5조(보상금의 지급)** “갑”은 용지(지장물 포함)매수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다음에 의하여 지급한다.

1. “갑”은 “을”이 작성 통보한 조서에 의한 보상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2. “을”은 편입구역 내 보상금 지급조서에서 누락된 물건(토지 및 지장물)과 당초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물건(토지 및 지장물)을 재감정하여야 한다. 또한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3. “갑”은 보상금 지급 내역을 “을”의 요구시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6조(보상금의 지급조건)** “갑”은 용지 및 지장물에 설정되었던 가등기·예고등기·가압류·양도금지의 가처분 등 기타 완전한 소유권이전에 방해되는 제한물권에 대해서는 용이한 소유권 취득을 위해 해지 또는 말소 때까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유예할 수 있다.

**제7조(보상업무추진비)** ①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토지 및 지장물 보상가액의 일천분의 이(2/1000)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업무추진비로 지급한다. 다만 보상업무추진비가 부족할 경우 “갑”과 협의에 따라 추가 지급한다.

② “갑”은 보상업무추진비를 토지(지장물 등 포함)보상 등 업무(출장 등 포함)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.

③ “을”은 제4조에 의거 보상금 재원의 입금 시 “갑”이 지정하는 계좌에 보상업무추진비를 입금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토지의 수용)** “갑”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 및 보상금의 공탁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.

**제9조(등기명의)** “갑”은 매수한 용지의 소유권을 시행자로 지정된 “주식회사 다운” 으로 이전등기 한다.

**제10조(정산)** ① “갑”은 보상금 지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집행내역을 통보하고 잔액을 정산 반납한다.

② 제7조제1항에 의한 보상업무추진비는 정산 반납하지 아니한다.

**제11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** 본 협약은 다음의 사유에 의해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변경한다.

2. 대남 전원주택 조성사업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 본 협약은 “갑”과 “을”의 상호협의 하에 해지할 수 있다.

3. 본 협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전에 집행된 경비와 채무는 “을”이 부담하되 보상업무추진비 중 미 집행 잔액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“을”에게 반환하며, 보상금이 지급된 토지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체결한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투자협약서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매한다.

4. 본 협약에서 정한 “갑”과 “을”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상호 협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5.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따로 협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12조(해석)** 본 협약내용의 해석상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“갑”과 “을”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고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

“갑”이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3조(관련법규의 적용) 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협약에 의한 용지매수 업무에 있어서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및 기타 보상관련 법규에 의한다.

제14조(협약서의 작성 및 보관) 본 협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서명·날인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

2009. 09. 28

경상남도 함양군

대표자 함양군수 천사령

천사령

주식회사 다운

대표자 대표이사 민세

